



성매매는 불법입니다!

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**인권침해 범죄**입니다.

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, 성적 학대와 유린, 강간, 폭행, 협박과 공갈 등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됩니다.

가출하거나 성매매 관련하여 상담, 숙식, 긴급구조, 학업·의료·법률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!

도움 제공 기관

▶ 청소년사이버 성매매 상담(십대여성인권센터)

- 전화상담 (02-6348-1318 / 010-3232-1318)
- 카톡(틱톡)상담 cybersatto
- 네이트온 cybersatto@nate.com
- 홈페이지 www.10up.or.kr

▶ 헬프콜 청소년상담전화 : 지역번호 + 1388

▶ 여성 긴급전화 1366 : 지역번호 + 1366



여성가족부

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
www.mogef.go.kr



여성가족부

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



[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!]

○ 신고포상금 제도란?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·권유 행위 등 성매매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* 근거 :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9조(포상금)

○ 아동·청소년이란?

아동·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. 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.

* 연도별 아동·청소년 기준 : '15년 기준으로 '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, '16년 기준으로 '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, '17년 기준으로 '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
○ 포상금 지급액은?

포상금 지급대상 범죄	포상금
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행위(폭행, 협박, 선불금, 고용 등) 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행위,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- 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대상 간음, 추행, 또는 간음·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	100만원
아동·청소년대상 성매매 행위, 성매매 유인·권유행위 등	7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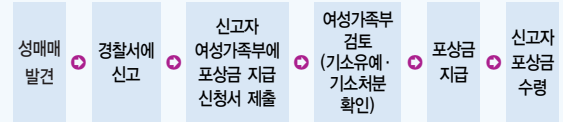
○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요?

범죄신고후,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*** 지급신청서 다운**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→ 정책 안내 →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신고 → 신고포상금 안내

*** 지급신청서 제출문의**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02-2100-6403)

○ 범죄신고와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* 포상금 지급조건 : 신고결과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

기소 :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(공소의 제기)

기소유예 :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

○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?

네.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.

다만,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,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,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.

○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?

네.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해요.

○ 범죄 신고는 어떻게 해요?

수사기관(국번없이 112)에 신고해요.

